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안철수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758
----------	-------

발의연월일 : 2026. 7. 3.

발 의 자 : 안철수 · 김승수 · 김성원
김 건 · 이종욱 · 김선교
송석준 · 조지연 · 김예지
이종배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창업기업이 창업 후 2년 이내에 금융기관으로부터 용자를 받기 위해 작성하는 증서, 통장, 계약서 등의 과세문서에 대하여 인지세를 면제하는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해당 인지세 면제 특례는 2026년 12월 31일을 일몰기한으로 두고 있어,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위하여 현행 세제 특례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창업기업의 용자 관련 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 면제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함으로써,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 비용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116조제2항).

법률 제 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제2항제3호 중 “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제9호 및 제1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19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생략)</p> <p>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인지세 면제 기일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p> <p>1. 2. (생략)</p> <p>3. 제5호부터 제7호까지, <u>제9호, 제11호 및 제19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u> 작성하는 과세 문서에만 적용</p> <p>4. (생략)</p>	<p>제116조(인지세의 면제)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p> <p>1. 2. (현행과 같음)</p> <p>3. -----<u>제9호 및 제11호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19호는 2028년 12월 31일까지</u>-----</p> <p>4. (현행과 같음)</p>